

문서번호	인사처-1471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3.07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직무대행 방침 제 74호

팀장	인사처장	이사장직무대행		
협 조				

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공무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2016.

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

□ 개정사유

- 2015년 임·단협 후속조치로서 인사규정 개정(안)의 이사회 부의에 따른 시행내규 개정
- 준공무직(설비, 보안, 주차)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보완

□ 주요내용

○ 인사규정시행내규

- 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 : 만 58세 → 만 60세

○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

- 가. 보수지급일 조정 : 매월 5일 → 매월 20일
 - 정규직(일반, 서비스, 공무직)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일원화
- 나. 제수당 지급기준 일원화
 - 기술수당 지급 자격종류 및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일반직 직원과 동일하게 설정
 - 위험수당과 병급이 불가능한 법정관리수당의 현실화(공무원 병급가능) 및 법정관리자 선임회피 방지를 위한 법정관리수당 조정
 - 경비직종의 소정근로시간 설정 : 월 270시간

□ 행정사항

- 인사규정개정(안) 이사회 의결 후 개정내용에 부합토록 공포·시행
 - 인사규정시행내규
- 이사장 결재 후 공포·시행 :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

붙임 :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공무원직직원관리내규 개정(안) 1부. 끝.